

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9. 25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9.9.9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: 2019.9.10.
- 다. 상정일자: 제233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(2019.9.25.)
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조희옥】

가. 제안이유

국가 간 분쟁, 남북관계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국가 간 분쟁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및 지원 신설(안 제6조의2)
- 2) 국가 간 분쟁, 남북관계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비용, 상호·상표 변경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설(안 제13조제9호)
- 3) 국가 간 분쟁, 남북관계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 기능 신설(안 제16조제5호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○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

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로 국내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동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

-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 간 분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근거를 마련하였고,
- 안 제13조제9호를 신설하여 국가 간 분쟁, 남북관계 등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마케팅비나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의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
- 이와 같은 기업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국가 간 분쟁, 남북관계 등으로 경제활동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음.

○ 종합 검토의견

- 일본정부는 지난 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전범기업들에게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8월 2일 포괄적 수출우대 자격인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여 양국 간 무역이 어려워지고 상호 여행객 급감 등으로 관련분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.

※ 참고자료 -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‘일본 수출규제 금융
애로 신고센터’ 상담접수 2019년 9월 현재 300건,
5,400억 원에 달함.〈쿠키뉴스. 2019.9.17.〉

- 이러한 사정의 여파로 여행업, 무역업, 부품 소재업, 숙박업 등의 중소기업 매출이 저조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물론 각 자치단체별로 피해기업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으며,
- 서울특별시는 기업지원센터에서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한편 피해기업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 2천억 원을 활용해 자구책을 제공하고 있고, 경상북도 역시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긴급 편성하여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가능한 행·재정력을 집중 가동하고 있음.
- 이러한 주변여건을 고려할 때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지원을 위해 금번 제출된 동 조례안의 개정조례안은 침체된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 조례안의 개정으로 관내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금융애로 해소, 판로 개척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※ 참고자료 - 수출규제 피해 관련 업종별 현황(2019년 8월 기준, 마포구)

구 분	계	무역업	여행업	숙박업	일식음식업
업체 수	2,345	391	979	470	505

- 다만, 이 사업의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2019년 10월 중 업체별 지원 신청 · 접수를 받고 이에 따른 기업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·결정, 11월 중 업체별 결과 통보 및 지원으로 되어 있는 바, 피해사례에

대한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야 할 위원회 심의 일정이 촉박하지는 않은지, 이러한 사유로 대상 선정에 있어 정확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점이 있으며 이의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수정가결(수정안 붙임)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

【 관련 법령 】

<중소기업기본법>
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7. 25.>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신설 2011. 7. 25.>

<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>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 안 번 호	19-125 관련
------------	-----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. 9. .

발 의 자 : 신종갑 외 1명

1. 수정이유

문구의 모호성과 용어의 삭제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6조의2, 제13조 및 제16조의 조문 중 ‘남북관계’ 용어를 삭제함.
- 나. 제6조의2 제2항 중 “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”를 “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”로 수정함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국가 간 분쟁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국가 간 분쟁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.

제13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국가 간 분쟁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비용, 상호·상표 변경 등에 소요되는 비용

제1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국가 간 분쟁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마케팅 지원 및 판로개척)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(마케팅 지원 및 판로개척)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6조의2(국가 간 분쟁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및 지원)</u></p> <p>① 구청장은 국가 간 분쟁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.</p>
<p>제13조(예산지원) 구청장은 기업 지원 및 육성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~ 8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3조(예산지원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국가 간 분쟁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비용, 상호·상표 변경 등에 소요되는 비용</p>
9. (생 략)	10. (현행 제9호와 같음)

제1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5. (생략)

제16조(위원회의 기능) (현행과 같음)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국가 간 분쟁 등으로 경제활동
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피해구
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6. (현행 제5호와 같음)